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2.

기획재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8월 29일, 박수민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8월 30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2024.11.13.)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1차 조세소위원회(2024.11.15.) 상정

제2차 조세소위원회(2024.11.18.) 상정

제3차 조세소위원회(2024.11.19.) 상정

제4차 조세소위원회(2024.11.20.) 상정

제5차 조세소위원회(2024.11.21.) 상정

제6차 조세소위원회(2024.11.22.) 상정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조세소위원회(2025.2.11.) 상정,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25.2.18.)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

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박수민의원)

미래의 교통수단은 전통적인 기존의 교통과 다르게 IT기술 및 통신기술과 접목되어 첨단화, 고급화될 것으로 전망됨. 모빌리티 분야의 기술혁신은 빠르게 진전되고 있으며, 인간이 인지할 수 있는 물리적 시·공간의 범위가 확장되고 있고, 용량증대, 환경개선, 에너지 절감, 편의성 증대, 안정성 확보, 인프라 확충 등 기술개발 환경의 여건에 영향을 받아서 다양한 교통수단에 대한 모델과 개념이 등장하고 있음.

미래 이동수단(Mobility)은 개인의 육상 이동 수단인 자동차 뿐 아니라, 개인용 비행체(PAV), 도심항공이동수단(UAM)과 친환경·초고속 운송수단인 수소 트럭, 하이퍼루프, 친환경·자율운행선박 등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고 정보통신 기술을 통해 초연결을 실현하는 육상·해상·항공 교통 및 물류 이동 수단의 총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그리고 미래형 이동수단과 운송수단은 산업간의 융합 및 상호간에 공통의 기술 기반을 바탕으로 한 융복합적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상호 연관성이 매우 높음.

이러한 모빌리티 분야의 급속한 환경변화 속에서 최근 세계 주요국들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초연결, 초지능화를 기반으로 제조 및 서비스 기술과 산업의 빠른 융복합 추진을 위한 미래 이동

수단 및 운송수단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특히 조선업의 경우 중국은 친환경 등 미래 선박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우리나라의 조선업이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는 실정임.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난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미래형 이동수단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투자를 지원하고 있으나, 그 지원대상 기술이 개인 육상 이동 수단인 자동차에 한정되어 있음.

이에 다양한 모빌리티 산업 간의 융합, 모빌리티 기술의 공유 및 기술개발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의 모빌리티 관련 국가전략기술으로 규정되어 있는 ‘미래형 이동수단’의 범위에 육상·해상·항공 등 다양한 모빌리티 수단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여 이에 대한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및 시설투자금액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안 제10조 및 제24조제1항제2호가목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검토보고서 참조.

4. 대체토론의 요지

생략.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박수영)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동 개정안 등 56건의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생략.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